수요자원시장 설명 자료

–전력거래소 수요시장팀('19.4.24)

□ **(개요)** 수요관리사업자가 **참여고객**를 모집하여 구성한 **'수요자원'이 전기사용량을 줄이면** 전력시장에서 **발전과 동등하게 보상하는 제도**

○ **(근거)** 전기사업법 제31조 '전력거래' 개정('14.04)으로 근거 마련

> **전기사업법 제31조** (전력거래) ⑤「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"**수요관리사업자**"라 한다)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**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**.

○ **(감축수단)** 조업 조정, 냉난방 조정, 자가용발전기 운전 등으로 수요감축

< 신뢰성 DR수요시장의 거래절차 >



□ **(정산)** 기본정산금과 실적정산금으로 구성

○ **(기본정산금)** 발전기 CP와 동일한 개념으로 수요관리 투자에 대한 보상

* 연간 약 43,000원/kW × 등록용량(kW) 수준

○ **(실적정산금)** 시간대별 감축실적에 대한 보상(감축량 × SMP)

* 시간대별 가격 변동되며, 2019년 3월 기준 평균 SMP : 112.42원/kWh

□ **(운영현황) 25개 사업자**가 **3,639개 참여고객, 4.14GW**을 전력거래소에 **등록**

* 참여고객은 수요관리사업자를 통해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수요자원시장 참여

【 연도별 등록 현황 】

구 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.3월
수요관리사업자 (개)	11	14	14	20	22	25
참여고객 (개소)	861	1,519	2,223	3,580	3,491	3,639
용 량 (MW)	1,520	2,889	3,885	4,354	4,271	4,141